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9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랑

담당변호사 최종인, 권만수, 김나리, 박지애, 정민지, 노하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근부, 김종선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민

담당변호사 김진문

변 론 종 결 2021. 4. 7.

판 결 선 고 2021.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9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9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20. 1. 30. kf94 마스크 9만 장을 구매할 목적으로 피고 명의의 C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4,9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후 물건이 오지 않아 형사고소를 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이는 조직적 사기이며, 피고는 계좌를 대여 또는 제공한 자임을 알게 되었다.

나. 주위적으로,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거나 혹은 적어도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송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취인의 금융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경우에도 수취인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으면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위 송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송금액은 입금 후 곧바로 전액 인출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송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대출거래 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2020. 1. 16. 피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2020. 1. 20. 위 계좌에 연결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20. 1. 10.경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여러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줄 무렵 D은행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2020. 1. 20. 피고 명의 계좌로 D은행 대출금 8,754,000원이 입금되기도 하였던 사실, ② 피고는 D은행 대출보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대출작업을

진행하였고, 대출을 위한 거래 내역 보완이라는 설명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OTP카드를 발송하였으며, 성명불상자가 OTP카드를 수령한 이후인 2020. 1. 22.경부터 2020. 1. 28.경까지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통해 피고 명의 계좌잔고를 비우는 이체 거래를 수회 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2020. 1. 29.부터 3~5일간 계좌작업이 들어간다’는 설명을 들었던 사실, ③ 피고는 2020. 1. 30.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이 내일 마무리되면 정확한 대출 금액 나온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작업이 끝나면 OTP카드를 돌려주는거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으나 답이 없었고, 이후 두시간 남짓 경과된 시점에 피고 명의 계좌 잔액 및 거래내역을 확인한 다음 곧바로 OTP카드분실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또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OTP카드를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인바,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 당시 피고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양도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일반적 · 추상적인 가능성을 넘어 구체적으로 이를 의심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효미